

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9-1324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9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### 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(주)홍신이앤씨(이보성), ② 강산건설(주)(박재윤) ③ 양우건설(주)(고삼상) ④ 대구광역시(권영진)

나. 전화번호 : ① 053-965-0103, ② 02-2007-9052, ③ 02-2629-3828, ④ 053-803-5375

2. 명칭 : 재생소재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수팽창 특성을 가진 아크릴레이트를 활용한 누수감지형 노출 복합방수공법(Acrylic Waterproofing System)

### 3. 내용요약

<분야>

건축 / 방수 / 복합방수

<기술의 요지>

본 신청기술은 재활용 PVC 소재를 30.25% 활용한 PVC 시트재와 수팽창성 아크릴레이트를 복합화한 시트재 상부에 탄성 도막방수재를 도포하는 기술로써 제조과정부터 자원 재활용, 유해물질 즉,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을 사전에 배제하는 등 환경친화적 소재의 개발을 중점으로 하여, PVC 시트재와 아크릴레이트 합지 생산 시스템 구축 및 재료적 일체성을 확보한 복합시트를 생산함으로써 재료간 박리·박락을 방지하고 또한, 아크릴레이트의 수반응 팽창 특성을 바탕으로 방수층 손상부에 물 침투 시 아크릴레이트가 물에 최대 약 2,850% 팽창하여 차수 효과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부위가 팽창함으로써 누수부 탐지가 가능한 노출형 복합방수공법에 관한 것이다

<범위>

본 신청기술은 건축구조물 옥상 방수층 형성 기술로, 재생소재를 30.25% 활용한 방수시트 하부에 최대 2,850% 수 팽창하는 특성을 가진 비건형 및 반고형화 아크릴레이트(Acrylate)를 합지하여 일체형 시트로 제조하고 그 상부에 탄성 도막재를 도포하여 형성하며, 방수층 손상 시 수 팽창을 통한 누수부 탐지가 가능하도록 한 노출형 복합방수공법이다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5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#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9-1327호

2019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# 1. 2019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

가. 공시대상 :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건축·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

나. 공시(가격) 기준일 : 2019년 6월 1일

다. 공동주택수 : 206,112호

(아파트 176,053호, 연립 4,897호, 다세대 25,162호)

라. 공시사항 : 공동주택의 소재지, 명칭, 동, 호수, 면적, 가격

(내용 생략,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·군·구에서 열람)

마. 열람장소 :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,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·동) 민원실

#### 2. 이의신청방법

가. 2019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(www.realtyprice.kr) 또는 서면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.

나. 이의신청은 『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,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·동) 민원실에 비치)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.

### ●국토교통부공고제2019-1330호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9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#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택시이용객 감소 등 택시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운수종사자 수입감소로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운전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신규로 취업하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면제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담을 경감하고 버스 및 택시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